비조치의견서 (□비조치 □조치 ☑기타)

	담당 부서	IT·금융정보보호단	담당자 (직위, 성명)	김동일 선임조사역	연락처	02-3145-7418
요청대상 행위	□ 물리적 망분리를 한 상태에서 보안USB 서버, 내부정보유출방지(DLP) 서버, 네트워크접근제어(NAC) 서버, 패치관리시스템(PMS)을 인터넷망에 구축 해야 하는지 여부					
판단	□ 물리적 망분리와 관계없이 단말기 보호 및 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한 운영 등을 위해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					
판단이유	□ 금융회사는 정보유출 등의 방지를 위하여 보조기억매체 및 휴대용 전산장비에의 접근을 통제하는 등 단말기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며(전자금융감독 규정 제12조)					
	○ 긴급하고 중요한 보정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정 작업을 하는 등 정보처리 시스템의 안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보호대책을 수립·운용하여야 합니디 (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).					
	관)	는 금융회사의 단말기 계없이 정보유출 또는 다면 해당 규정을 준수	정보처리시스	스템의 불안전형		

- ※ **비조치의견서의 효력**(「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」 제6조의2, 제11조제1항· 제2항 참조)
 - 1.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행위가 법령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하는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회신내용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.
 - 2. 그러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
 - 가.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
 - 나. 신청인이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
 - 다.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상이한 행위를 한 경우
 - 라. 관련 법령등이 변경된 경우

- 마.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변동,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의 의견을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
- 3. 금융감독원장이 일정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제재 등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조건부 비조치의 견서를 회신하였으나 신청인이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은 이미 회 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